

# 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9년 2월 25일 낮 12시 ~ 오후 2시
2. 장 소 : (주)셀트리온 1공장 3층 회의실
3. 참석인원 : 대표이사 박경옥 이 사 구경희  
이 사 김혜미 이 사 문경수  
이 사 장 진 이 사 천옥진  
감 사 윤규성

## 4. 심의 안건

- 제1호 의안 2018년 결산의 건
-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
-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-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

## 5. 회의 내용

### 1)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

- 대표이사 박경옥 : 법인 정관 28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셀트리온복지재단의 2019년도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### 2) 대표이사 인사

- 대표이사 박경옥 :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나누고, 이번 이사회에서 2018년도 법인의 결산안 의결 및 임원 선임, 정관변경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.

### 3) 부의 안건 상정

- 대표이사 박경옥 : 이번 이사회에 법인 사무국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 4건 외에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는지 묻다.
- 이사 전원 : 없다고 얘기하다.
- 대표이사 박경옥 :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없으면 법인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선포하다.

### 4) 부의 안건 심의

#### << 제1호 의안 2018년 결산의 건 >>

- 대표이사 박경옥 : 2018년 셀트리온복지재단 법인회계 세입·세출 결산(안)을 심의, 상정하고 결산(안)을 설명하다.  
세입결산액: 1,523,222천원 / 세출결산액: 789,080천원
- 이사 구경희 : 법인의 세입·세출결산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.
- 대표이사 박경옥 : 구경희 이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.
- 이사전원 : 구경희 이사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.
- 대표이사 박경옥 : 법인 정관 28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셀트리온복지재단의 세입·세출결산(안)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.

#### <<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>>

- 대표이사 박경옥 :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본 법인을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

의장은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대표이사 박경옥은 본 법인의 경영상 그 직에 계속 중임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그 중임을 가결하다.

#### <<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>>

- 대표이사 박경옥 : 이사 박경옥, 외부이사 김혜미의 임기가 만료됨을 알

리고, 이에 새로운 외부추천이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 외부 이사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을 설명하고,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의장은 새로운 외부이사 1인을 선출할 것을 묻고 그 의견을 구한바,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사 박경옥은 본 법인의 경영상 그 직에 계속 중임함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그 중임을 가결하고, 신입이사로 아래의 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하다.

#### 결의 내용

##### ① 중임 이사 선임

- 성 명 : 박경옥
- 중임 연월일 : 2019. 3. 21 ~ 2022. 3. 21

##### ② 신규 이사 선임

- 성 명 : 김상유
- 취임 연월일 : 2019. 3. 22 ~ 2022. 3. 22

#### <<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>>

- 대표이사 박경옥 : 정관변경(안)을 심의, 상정하고, 별첨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하다.

의장은 본 법안의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바,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승인 가결하다.

별첨: 셸트리온복지재단 정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#### 4) 폐회

- 대표이사 박경옥 : 기타 토의사항 여부를 묻고, 없으면 폐회 동의를 묻다.

- 이사 장진 : 이사회회 폐회를 동의하다.
- 이사 천옥진 : 장진 이사의 폐회동의에 재청하다.
- 이사전원 : 폐회를 찬성하다.
- 대표이사 박경옥 : 2019년 셸트리온복지재단의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하다.  
(회의 종료 시각 오후 2시)

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인원이 서명 날인함.

2019년 2월 25일  
사회복지법인 셸트리온 복지재단



의 장 대표이사

박 경 옥



이사

구 경 회



이사

김 혜 미



이사

문 경 수



이사

장 진



이사

천 옥 진



감사

윤 규 성



## < 정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<b>제6조(자산의 관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1. ~ 2. 생략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③ 생략</p>	<p><b>제6조(자산의 관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<b>제28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생략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</p>	<p><b>제28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회의 의사는 <u>대리인이나</u>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</p>	
<p><b>제34조(해산 및 합병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<u>사회복지사업법과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</u>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<b>제34조(해산 및 합병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<u>사회복지사업법과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다만,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·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사회복지 사업법 관련 조항의 변경내용 반영</p>
<p><b>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<u>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,</u>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</p>	<p><b>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<u>(삭제)</u>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</p>	